

2020년도 4/4분기

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21. 2.

감사위원회

1. 개요

□ 관련 근거

○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 "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<u>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</u>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"

□ 보고 대상

○ 기 간: 2020. 10. 1. ~ 12. 31.(2020년 4분기)

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시장 핫라인) 및 오프라인 (우편, 방문 등)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

□ 접수결과

○ 2020년 4분기 총 145건 접수

〔표 1〕 2020년 4분기 창구별 접수현황

| (± 1) 2020 | | | | | | | (|
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접 | 수 | 창 | 구 | 합 계 | 10월 | 11월 | 12월 |
| 공 | 직자ㅂ | 미리스 | 신고 | 93 | 35 | 26 | 32 |
| 공 | 익 | 신 | 고 | 52 | 15 | 23 | 14 |
| 부 | 정 | 청 | 탁 | _ | 0 | 0 | 0 |
| 퇴진 | 직공무 | 무원특 | 투혜 | _ | 0 | 0 | 0 |
| 합 | | | 계 | 145 | 50 | 49 | 46 |

(단위 : 건)

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□ 제보 경로 분석
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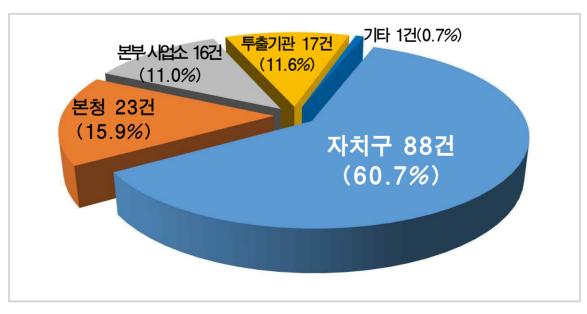
| 경로 | 합 계 | 온 라 인 홈페이지/모바일 | 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 | 기 타 응답소/우편/방문/팩스 |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접수건수 | 145 | 134 | 5 | 6 | |
| | (100%) | (92.4%) | (3.5%) | (4.1%) | |

(단위 : 건)

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□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-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88건(60.7%)으로 가장 많았음
 - 건축법,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시민 생활상의 공익신고 29건
 - 자치구 직원 복무 및 불친절 등의 공직자비리신고 등 59건
- 본청 소관 사무 제보 23건(15.9%). 본부/사업소 소관 16건(11%)
 -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1건, 공직자비리신고 등 22건
 - 본부/사업소의 경우 공직자비리신고 등 16건
-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17건(11.6%), 기타 1건(0.7%)
 -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1건, 공직자비리신고 등 16건
 - 기타 1건은 시 소관사무가 아닌 건



3. 공익제보 분류

□ 제보내용의 분류

○ 접수된 145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112건

[표 3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

| | 공익제보 혀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총계 | 부패신고 | 공익신고 | 일반민원/기타 | |
| 145 (100%) | 81 (55.9%) | 31 (21.3%) | 33 (22.8%) | |

(단위 : 건)

※ 조례상 '공익제보' 해당 신고 범위

| 구 분 | 개 요 | 신고 대상 행위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--|
| 부패 신고 | 부패방지법 제2조(정의) "부패행위"신고 | 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 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| | | | |
| 공익 신고 |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"공익침해행위"신고 | 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467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 | | | | |
|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|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| 공정한 업무수행, 부당이익의 수수금지, 업무숙지의 의무,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,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 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 위반 등 | | | | |

^{*} 청원/제안/건의/항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, 공익제보 처리에 준하여 접수 답변하고 있음

4. 공익제보 내용 분석

□ 공익제보 해당 112건 세부내역

○ 부패신고 해당 81건 세부 내용

[표 4]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

| (표 4) 세군ㅠ 글러 ㅜ | 116 110 | | (긴기 : 건/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|--|
| 구분 | 소관기관 | 건수 | 내 용 |
| | 자 치 구 | 1 | |
| 부 정 청 탁 | 투자출연기관 | 1 | 업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의심 |
| | 소 계 | 2 | |
| | 본 청 | 14 | |
| | 본부·사업소 | 11 | |
| 어 ㅁ ㅂ ᅯ 귂 | 자 치 구 | 28 | 업무 추진 과정 중 |
| 업 무 부 적 정 | 투자출연기관 | 13 | 고의 또는 미숙/부주의 행위 관련 (업무 부당행위 혹은 업무소홀) |
| | 기 타 | 1 | |
| | 소 계 | 67 | |
| | 본 청 | 1 | |
| 불 공 정 행 위 | 자 치 구 | 2 | 입찰이나 채용, 인사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의심 |
| | 소 계 | 3 | |
| | 본 청 | 2 | |
| н | 본부·사업소 | 4 | 초과근무/출장 부정행위, 직무 태만, |
| 복 무 | 자 치 구 | 3 | 불친절, 품위유지 위반 등 행동강령 관련 |
| | 소 계 | 9 | |
| | <u>"</u> | | |

(단위 : 건)

^{*}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○ 공익신고 해당 31건 세부 내용

[표 5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| [표 5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 (단위 : 건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구 분 | 건수 | 소관기관 | 조치 상황 | 내 용 | | | |
| 감 염 병 예 방 법 | 5 | 자 치 구 | 개선3, 해당없음1, 취하1 |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등 | | | |
| 건 축 법 | 8 | 자 치 구 | 개선7, 해당없음1 | 불법건축물 신고 등 | | | |
| · | 1 | 투자출연 | 해당없음1 | 위법한 건축공사 원상복구 | | | |
| 공동주택관리법 | 1 | 자 치 구 | 중복1 | 입주자대표회의의 규정위반 | | | |
| 대기환경보전법 | 1 | 자 치 구 | 개선1 | 매연차량 신고 | | | |
| 도 로 교 통 법 | 4 | 자 치 구 | 개선4 |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등 | | | |
| 도 시 계 획 법 | 1 | 자 치 구 | 진행중1 | 종교부지의 공원 편입은 부당함 | | | |
| 도 시 정 비 법 | 2 | 자 치 구 | 진행중2 | 재건축사업 관련 비리 신고 등 | | | |
| 상 표 법 | 1 | 자 치 구 | 진행중1 | 위조품 판매 신고 | | | |
| 소 방 기 본 법 | 1 | 자 치 구 | 개선1 | 옥상대피로 폐쇄 신고 | | | |
| 옥 외 광 고 물 법 | 1 | 자 치 구 | 개선1 | 불법광고물 단속요청 | | | |
| 의 료 법 | 1 | 자 치 구 | 해당없음1 | 의약품 재사용 의혹 등 | | | |
| 저 작 권 법 | 1 | 본 청 | 개선1 | 사진 무단도용 신고 | | | |
| 주 차 장 법 | 1 | 자 치 구 | 시정명령1 |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| | | |
| 주 택 법 | 1 | 자 치 구 | 해당없음] | 조망권 및 재신권 침해 | | | |
| 화 물 자 동 차 법 | 1 | 자 치 구 | 해당없음] | 영업용화물차량 등록신고 | | | |
| 총 계 | 31 | | | | | | |

^{*}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5. 처리 및 조치 결과 (2021.2.8. 현재)

□ 처리 내역

[표 6] 접수제보 처리 현황

| 총계 | 처분 및 | 개선 40 | 종결 74 | | | 진행중 | 취하 |
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|-----|----|
| 중계 | 처분(조치) | 개선 등 | 해당없음 | 권한없음 | 중복 | 신성공 | 귀이 |
| 145 | 10 | 30 | 54 | 6 | 14 | 23 | 8 |

(단위 : 건)

(단위 : 건)

- ※ 개선 등 내역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개선약속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- 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3조 제5항

□ 처분(조치) 내역

[표 7] 공익제보 조치 결과(요구 포함)

| 번호 | 신고구분 | | 신고 내용 | 처분기관 | 조치 내역 |
|----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부 | 패 | 품위위반 및 초근출장 수당 부당수령 | 감사위원회 | 중징계요구1, 환수(1,755,090원) |
| 2 | 부 | 패 | 경품 행사 당첨자 부당수렁 | 감사위원회 | 훈계1, 통보1 |
| 3 | 부 | 패 | 구매 수의계약 적정성 감사요청 | 감사위원회 | 주의요구1, 통보1 |
| 4 | 부 | 패 | 위탁시설 직원 부적정 채용 | 감사위원회 | 문책요구3 |
| 5 | 부 | 패 | 공유시설 입주자의 계약위반 | 본 청 | 퇴거조치 |
| 6 | 부 | 패 | 소방공무원 복무 해이 | 사 업 소 | 감봉1 |
| 7 | 부 | 패 | 업무용 휴대폰 사적 사용 | 사 업 소 | 견책1 |
| 8 | 부 | 패 | 사회복지시설 급여 부정수급 | 자 치 구 | 시정명령 |
| 9 | 부 | 패 | 구 체육센터 강사의 사례비 수렁 | 자 치 구 | 계약해지 |
| 10 | 공 | 익 |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등 | 자 치 구 | 자진정비지시(사전처분통지) 및 건축물 시정명령 |